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9누1065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207 판결
변론 종결	2019. 7. 24.
판결 선고	2019.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redacted]시 D 공장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435,6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7,424,000원, 지방교육세 1,742,400원, 농어촌특별세 871,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이 사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 12.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5.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전기·전자판넬 제조업을 추가한 것 역시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 경정이 불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5. 1. 12. 전기판넬 제조업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고 있고, ② 설령 그렇지 않고 2015. 1. 12. 서비스업을 창업하였다고 보더라도 2015. 10. 15.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위 서비스업 개시일과 제조업 개시일 간의 간격이 극히 짧으므로 2015. 10. 15. 제조업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에 기재한 바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 12. 상호를 "C"로, 사업장 소재지를 "[redacted]시 B"으로,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전기설계, 시운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무렵부터 F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사업장 소재지는 F의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장의 소재지로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그 직원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주로 발주처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2015년 10월경 김해시 E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2015. 10. 15. 상호를 "G"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redacted]시 E"로,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전기, 전기판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이 무렵부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원고와 그 직원들은 위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에서도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그 직원들이 수행한 작업은 주로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패널, panel)"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작업은 구체적으로 사각형 판 또는 그 판으로 이루어진 상자에 전기 부품들을 붙이고 배선을 하고 이를 위한 납땜 · 땜질 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예로 들면 별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원고와 그 직원들이 이러한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은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15. 1. 12.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2015. 10. 15.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은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하여 자재를 스스로 구입하지 못하고 발주자가 구입하여 준 자재를 받아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반면에, 2017년 이후에는 스스로 자재를 구입하여 판넬을 만든 다음 이를 발주처의 현장에 가지고 가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와 그 직원들이 만들어서 설치한 판넬은 발주자의 공장에 위치한 기계 설비에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원고와 그 직원들은 위와 같이 판넬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작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판넬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만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장 설치 작업을 수행할 때에 원고와 그 직원들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위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개인이 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어 세액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1)과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6호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경감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위에서 본 세액 경감의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체에서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역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즉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제조라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제조업의 하위분류(중분류)에 '전기장비 제조업(28)'이 있고, 그 하위분류(소분류)에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281)'이 있으며, 다시 그 하위분류(세분류)에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2812)'이 있는데, 이것은 '발전소 및 산업 장비, 주거용 및 가정용 전기 ·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 · 보호 또는 접속용의 기기와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아가 다시 또 그 하위분류(세세분류)로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이 있고, 이것은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세액 경감의 요건으로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이 위에서 살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비록 2015. 1. 12. 처음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할 당시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무렵부터 2015. 10. 15.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조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그 창업일로 보는 최초 사업자등록일인 2015. 1. 12.로부터 4년 이내인 2018. 4.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앞에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등이 정한 세액 경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위 조항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요건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15. 1. 12. 무렵부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2015. 10. 15.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원고와 그 직원들이 사각형 판 또는 그 판으로 이루어진 상자에 전기 부품들을 붙이고 배선을 하고 이를 위한 납땜 · 땜질 등을 하는 방식으로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사각형 판, 전기 부품, 전선 등의 '원재료'에 납땜 · 땜질 등의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그 투입된 원재료를 별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본 '제조업'의 기본 정의에 일치한다.

2) 특히 '제조업'의 정의에서 '원재료'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도 포함되고, '구입한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것 역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바, 원고와 그 직원들이 수행한 위에서 본 작업은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사각형 판, 전기 부품, 전선 등의 '제품', 즉 '기계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하는 활동이므로 위와 같은 정의, 분류에 충분히 포섭된다.

3) 무엇보다 원고와 그 직원들이 위에서 본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은 앞에서 본 제조업의 하위분류(세세분류)인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에서 말하는 "배전반"이나 "전기 자동제어반"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사전적으로 "배전반"은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곳에 장치한 반(盤)으로서, 안전장치, 계기, 표시등, 계전기, 개폐기 따위를 배치하여 전로(電路)의 개폐나 기기(機器)의 제어와 감시를 쉽게 하는 것'을 뜻하고, "제어반"은 '기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나 장치의 원격 조작에서, 제어용의 계기류나 스위치 따위를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비한 판'을 뜻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와 그 직원들이 만드는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은 기계 설비에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전기 부품들을 붙이고 배선을 하여 발주자의 공장에 설치하는 판 또는 상자이므로,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발주자의 공장)에 장치한 반(판 또는 상자)으로서 안전장치, 계기, 표시등, 계전기, 개폐기 따위(전기 부품들)를 배치하여 전로의 개폐의 제어를 쉽게 하는(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것'에 해당하여 "배전반"의 정의를 충족할 뿐 아니라, '전기에 관하여 자동으로 기계의 원격 조작을 제어하는(기계 설비에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용도의 계기류나 스위치 따위(전기 부품들)를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판(판 또는 상자)'에 해당하여 "전기 자동제어반"의 정의 역시 충족한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만드는 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의 정의, 즉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전기 부품들)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판 또는 상자)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발주자의 공장에 위치한 기계 설비)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그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시설 장치나 기계 장치 등 제조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 장치나 기계 장치를 갖출 것'을 필수 요건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수작업에 의한 제조도 제조업의 활동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갑 제6호증의 기재 내용과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그 직원들은 펜치, 니퍼,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별지 사진과 같은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만들어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이 제조업의 활동 방식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① 원고가 자재를 스스로 구입하지 않고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받아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②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작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내용에서 '사업자 스스로 자재를 구입할 것'이나 '사업자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여 제작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② 부분의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내용 가운데 "3. 타산업과 관계"의 자.항을 근거로 드는 듯하나, 위 항은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와 그 직원들이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직접 제조하는 이 사건에 적용할 항이 아니다).

6)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매출 내역을 보면 ① 현장 설치만 실시하고 대금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거나 ② 다른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제품 판매가 아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역이 있어, 원고의 사업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에 따르면,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뿐만 아니라 '설치'도 제조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고, 제조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제조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그 직원들이 기계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만드는 작업, 즉 '제조'를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판넬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설치하였거나 때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판넬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만 수행하고 대금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주된 활동인 '제조'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조업의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②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매출 내역 가운데 H 주식회사 등에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은 원고가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을 만들어 납품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설치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그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전기 자동화 제어 판넬"의 제조·판매 또는 그에 부수한 설치 행위가 아닌 전기공사 자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그 밖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판넬 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간판이나 표시의 유무만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8123)'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안좌진

판사 서범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10 ~ 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발전소 및 산업 장비, 주거용 및 가정용 전기 ·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개폐 · 보호 또는 접속용의 기기와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재료를 주형 또는 성형하여 만든 전기 공급 및 제어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 222, 231, 232에 각각 분류
· 퓨즈용 금속선 또는 금속제 스트립 제조(242)
· 탄소 또는 흑연제 전극 제조(28902)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2721(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예 시>

· 교류(AC) 및 직류(DC) 드라이브 제조
· 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 배전기 부분품 제조
· 수치 제어반 제조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

<제 외>

· 산업용 컴퓨터 제조(2631)
· 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27216)
· 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27215)
· 시계 구동부 제조(27400)
·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281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2629)
· 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3033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사진

[외부 모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07

[내부 모습]

